

#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

녹색성장위원회

# 목 차

## I . 새로운 패러다임 - 녹색성장

## II . 국내외 관련법 동향

## III .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(안)

- 그간 추진경과
-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(안) 체계
-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(안) 기본방향 및 의미
-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(안) 주요내용
- 향후 계획

# 새로운 패러다임 - 녹색성장

**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 
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입니다.** (2008. 8. 15. 건국 60주년 기념식)

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.  
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발전  
패러다임입니다.  
녹색성장을 통해 다음 세대가 10년, 20년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.

**‘녹색성장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**  
**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는 녹색성장에 어느 나라보다  
앞서 가야 합니다.** (2008. 10. 28. 경상남도 업무보고 및 토론회)

〈이명박 대통령〉

# 새로운 패러다임 - 녹색성장

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도야코 G8 정상회의에서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정책기조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〈반기문 UN 사무총장〉

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에 새 장을 열어 그 과정에서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.  
청정에너지에 투자하는 어떤 기업도 워싱턴의 동지가 될 것이며,  
기후변화에 대해 행동하는 어떤 국가도 미국이라는 동맹을 얻을 것입니다.

〈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〉

# 새로운 패러다임 - 녹색성장

녹색기술 분야는 지난 1990년대 IT가 보였던 것과 같은 큰 성장을 실현할 것입니다.

앞으로 12년 동안 1,000억 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여,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'그린혁명'을 통해 재생에너지 이용을 10배로 늘리겠습니다.

**〈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〉**

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.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려왔고,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.

환경정책은 투자정책이며, 이는 미래성장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.

**〈니콜라 시르코지 프랑스 대통령〉**

# 국내외 관련법 동향

## □ 외국 입법동향

- Post-2012 기후체제에 대응책으로 **각국 국내제도 정비 움직임 강화**
  - '07~'08 동안 유럽 각국, 미국, 프랑스, 영국, 일본, 호주 등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관한 **각종 법안 및 정책 proposal** 제안 (핵심내용 : '배출규제와 거래제 도입 및 강화' 등)
  - 프랑스, 영국, 일본, 호주는 **선도적, 선제적 입법**을 추진 중

# 국내외 관련법 동향

## □ 유럽연합(EU)

- EU 회원국간의 공조체제 통한 기후변화대응
  - ‘20.20.20’ 기후와 에너지 통합법 (‘20.20.20’ Climate and Energy Package 2008)의 유럽의회 승인('08.12)을 통해 유럽 차원에서의 온실가스 감축,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3대 목표 설정

### <3대 목표>

- ① ‘20년까지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 20% 감축(국제협약체결시 30%)
- ② ‘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20% 확대
- ③ ‘2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 20% 증진

# 국내외 관련법 동향

## □ 유럽연합(EU)

### ○ '20.20.20' 기후와 에너지 통합법 주요내용

#### ■ EU-ETS 개정지침

- 대상 산업부문 감축수준을 '20년까지 '05년 보고된 배출량 기준 21% 감축
- 유상할당 수입의 50% 이상을 관련 기술개발 및 개도국 지원으로 활용
- 항공부문에 대한 ETS 편입 유지 및 해운부문 제안

#### ■ Effort sharing 관련 결정

- EU-ETS 제외부문(교통, 건물, 서비스, 농업 등)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할당을 통해 '13~'20년까지 10% 감축

#### ■ 재생가능에너지 지침

- '20년,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20% 이상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목표치 설정 등

#### ■ 자동차 CO2 감축규정

- 감축목표 설정(단기 : 130g/km, '20년까지 95g/km)

# 국내외 관련법 동향

## □ 프랑스

- **그르넬 환경법** (Loi de programme relatif à la mise en oeuvre du Grenelle de l'Environnement) 하원 의결('08.10.21), 현재 상원의결 중
- 주요내용
  - '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'90년 수준의 ¼로 감축
  - '20년까지 탄소부문에서 유럽내 가장 효율적인 경제체제 구축 목표
  - 부문별 목표설정
    - 건축물 분야 : 최종 에너지소비 40% 감축, 온실가스 배출량 25% 감축  
(기존건물) '20년까지 기존 건물 에너지 소비량 38% 감축  
향후 10년간 에너지 소비량 40%, 온실가스 배출 50% 감축
    - 교통분야 : '20년까지 CO<sub>2</sub> 배출을 현수준의 20% 감축, '90년 수준 복귀  
(화물운송) '12년까지 비도로 운송수단 비중 25% 증가  
(도시교통) '20년까지 차량 CO<sub>2</sub> 배출량을 km당 176g ⇨ 130g 감축

# 국내외 관련법 동향

## - 부문별 목표설정

- 지속발전 분야 연구 : 4년내 무공해 기술 분야 연구 및 환경오염예방 비용을 민간 원자력 분야 연구예산 수준으로 상향 조정(4년간 10억 유로 추가 지원)
- 모범적인 정부 : 정부 입법안은 환경영향평가가 수반되어야 함
- 기업법 개혁
  - 주주총회시 이사회, 감독심의회가 제출하는 연간 결산보고서에 지속발전 관련 정보 포함
  - 직원수 250명 이상 법인대상 5년내 에너지효율 및 탄소관련 평가서 작성의무 부과(대기업은 2년내 작성의무)
- 소비분야 : 서비스와 제품의 환경마크표시 강화('10년부터 자연보호 비용 표시)

# 국내외 관련법 동향

## □ 영국

- **기후변화법**(Climate Change Act) 의회통과('08.11), 기후변화위원회 발족('08.12), Carbon Budget 및 2050 장기목표 제안
    - 세계 최초로 '50년 80%, '20년 26% CO<sub>2</sub> 배출감축을 **법적 의무화**
    - carbon budgeting system을 통해 단계별 cap 적용 (1단계 : '08-'12, 2단계 : '13-'17, 3단계 : '18-'22)
  - **향후 일정**
    - '09년 1분기까지 정부의 3단계 Carbon Budget 및 2009 할당량 발표
    - '09년 6월 1일까지 정부 Carbon Budget안 양원 통과 추진
    - '09년 중반까지 Carbon Budget에 따른 후속 정책 및 제안서 발표
- \* 2020년까지 풍력발전기 7,000기 건설로 16만명 고용효과 창출

# 국내외 관련법 동향

## □ 일본

- '97년 교토의정서 채택에 따라 **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**
  - 이후 3차례 개정('02.5월, '06.6월, '08.3월)
  - 동법에 따라 '06년부터 특정사업자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·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가 집계·공표하는 제도 시행

### 일본 자주참가형 배출권거래제(JVETS) 시범사업 실시 ('08.10월)

- 기업의 자발적 참가 및 배출량목표(배출한도)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 국내배출량 거래제도 시행안 확정(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)
  - 기업의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 후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감축 및 배출한도 크레딧(credit)의 매매
  - 최종적으로는 Cap & Trade와 같이 의무가 부과되는 제도를 지향

### \* 현재 일본판 그린 뉴딜 구상 중

- 주요내용
  - 향후 5년간 환경비즈니스 시장규모 70조엔('06년) ⇨ 100조엔 이상 확대
  - 고용자수 140만명 ⇨ 220만명 이상으로 확대

# 국내외 관련법 동향

## □ 호주

- 국가 온실가스·에너지 보고의무법 (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) 통과('07. 9월)
  - 일정기준이상 CO<sub>2</sub> 배출설비는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자료를 외부검증을 거쳐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
  - 정부는 웹사이트 또는 출판물을 통해 공표
  - (벌칙) 허위정보 보고 및 배출자료 7년간 미보관 시 형사처벌 및 별도의 민사상 책임 부과

# 국내외 관련법 동향

## □ 미국

- Lieberman-Warner 기후안보법(2008), Bingaman-Specter 저탄소 경제 법안(2007) 등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연이어 제안됨
  - Lieberman-Warner 기후안보법 (2008)이 상원에서 좌초, 오바마 행정부 출범으로 재추진 될 것으로 예측
  - 법안 주요내용
    - (감축목표) '50년까지 Cap 강화로 온실가스 배출 '05년 대비 63% 감축
    - (제도도입) 미 전역에 Cap and Trade 시스템 도입으로 주요 온실가스 배출 제한
    - (보고의무) 에너지 다소비 업체 및 발전소 대상 온실가스 배출내역 보고의무 부과
    - (벌칙규정) 보고의무 규정 위반업체는 위반일수마다 \$25,000 미만의 벌금부과

# 국내외 관련법 동향

## \* 오바마 에너지·환경 주요 정책

### ■ *New Green Jobs* 창출

– 향후 10년동안 청정에너지분야 1,500억달러 투자로

5백만명 일자리 창출

– 미국내 plug-in 하이브리드 자동차 1백만대 보급

– '12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중 10%, 2025년까지 25% 목표

### ■ '50년까지 온실가스 80% 감축을 위한 cap & trade 프로그램 시행

# 국내외 관련법 동향

## □ 국내 입법동향

- 그간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안('99년)의 정부입법을 시작으로 의원발의(6회)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
- '08년 이전
  - 정부입법 : '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안'(환경부, '99.7월)
  - 의원입법 : '지구온난화 방지대책에 관한 법률안'(이정일 등 20인, '01.12월)  
'지구온난화 가스 저감대책 법안'(이호웅, 이부영 등 23인, '01.12월)  
'지구온난화 방지대책법'(이호웅 대표, '04년)
- \* 법안 기본구성
  - 대책의 기본방향, 주체별 역할 및 이행 내용, 대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대책기구 설치규정, 자원 조성 방안 등을 명시

# 국내외 관련법 동향

## □ 국내 입법동향

### ○ 최근 입법동향('08년~)

- 정부입법 : '기후변화대책기본법'('08년 9월)

\* 현재 「기후변화대책기본법(안)」은 관계부처 협의, 입법예고만 하고  
제정추진 중단

- 의원입법

■ 11월 7일, '기후변화대책기본법'(김성곤의원 등 33인, 환노위 심사중)

■ 11월 25일, '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'  
(배은희의원 등 21인, 접수)

■ '09년 1월 14일, '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'(이인기의원 등 25인, 접수)

#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(안)

## □ 그간 추진경과

-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법초안 접수('08. 11월)
- 녹색성장기본법(안) 초안 작성('08. 12월)
- 관계부처 협의('08. 12월)
- 입법예고('09.1.15~1.29)
- 산업계 간담회('09.1.23)
- 공청회 개최('09.1.28)

#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(안)

## □ 법체계

제1장 총칙

목적, 용어정의, 추진원칙, 주체별 책무 등

제2장 녹색성장 국가전략

국가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·시행, 점검/평가

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등

위원회 구성과 운영, 기능 등

제4장 녹색성장 추진

녹색경제/산업육성, 자원순환, 녹색기술/금융, 환경친화적 세제개편, 녹색일자리 창출 등

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

기후변화·에너지기본계획 수립, 목표관리, 배출량 보고, 총량제한 배출권거래, 소송부문관리, 적응대책 등

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

국토/물/녹색교통/건축/농업/생산 및 소비, 생활운동 등

제6장 보칙

재정지원, 국제협력 증진, 국가보고서 작성 등

제7장 벌칙

과태료

#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(안)

## □ 기본방향 및 의미

- ① 기후변화대응, 에너지효율화, 신재생에너지,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발전, 녹색국토 등 녹색성장에 관한 부문을 종합적·포괄적으로 담은 사실상 세계최초 녹색성장 기본법(국제적인 모범사례)
- ② 제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대책을 ‘녹색성장 국가전략’을 정점으로 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 설정 및 체계화
- ③ 녹색기술·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및 지원
- ④ 저탄소사회(low carbon society) 구현을 위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책을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·조화
- ⑤ 에너지자립,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목표 설정 관리와 추진성과 점검 및 평가 등 제도적 장치 마련
- ⑥ 친환경 제품 생산 및 소비 확대 유도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세제운영 방향 제시

#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(안)

⑦ 온실가스 배출량, 에너지 생산량 등의 보고와 공개를 통한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와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토대 마련

⑧ 세계 탄소시장 참여와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근거 마련

⑨ 국토·교통·건물 등 녹색생활,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규정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푸르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⑩ 녹색생산, 소비문화의 확산 유도

⑪ 정부·민간 공동의 녹색산업 펀드 조성 및 금융·세제 지원 등을 통한 녹색기술, 녹색산업으로의 효율적 자원배분과 투자 유도

#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(안)

## □ 주요내용

### 1. 법의 성격(법안 제8조)

-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“기본법”으로서, 다른 법률(에너지기본법,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)에 우선 적용, 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,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준용

### 2.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·시행(법안 제9조)

-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·추진전략·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‘녹색성장 국가전략’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·시행

### 3. 녹색성장위원회 설치(법안 제14조)

- 정부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의 ‘녹색성장 위원회’ 설치, 재정부·지경부·환경부·국토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0인 이내로 구성

#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(안)

## 4. 녹색경제·산업 육성·지원(법안 제21조)

- 정부는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·육성하고, 녹색경제·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촉진, 녹색경제·산업을 육성·지원하는 시책을 강구

## 5. 환경친화적 세제 운영(법안 제27조)

-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부담 강화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감소를 위한 국가 조세정책 운영

## 6. 기후변화대응,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·시행(법안 제38조, 39조)

- 정부는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·단계별 대책, 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정적 공급 등을 포함한 ‘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’과 ‘에너지기본계획’을 녹색성장 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·시행

#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(안)

## 7.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(법안 제40조)

-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.에너지 절약.에너지 자립.에너지 이용효율·신재생에너지 보급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 설정·관리와 목표달성을 위한 조기행동 촉진, 경영지원, 기술적 조언 등의 지원 조치 강구

## 8.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·운영(법안 제41조, 42조)

-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보고 및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제 구축·운영

## 9.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(법안 제43조)

- 총량제한(Cap & Trade) 배출권거래제를 도입·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, 구체적인 할당방법, 등록·관리방법, 거래소설치·운영, 도입시기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함

#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(안)

## 10. 녹색성장 관련 계획 수립시 협의(법안 제24조, 48조)

- 과학기술기본계획, 국토종합계획 등 녹색성장관련 주요계획 수립 시 녹색성장 위원회의 의견 청취

## 11. 녹색산업투자 회사 설립(법안 제59조)

- 녹색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, 정부 출자를 통해 민간투자 확대, 위험 부담회피 유도

#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(안)

## □ 향후 계획

- 입법예고 기한 : '09.1.15~1.29
- 규제 심사 : '09. 2월 중순
- 법제처 심사 : '09. 2월 하순
- 차관회의,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월말 국회 제출

#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(안)

본 법안은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인 **저탄소 녹색성장**을 **효율적·체계적**으로 추진하기 위한 **법제도적 기반**으로써 각계각층의 합의에 의한 **조속한 법 제정**이 필요함.

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환경과 자원·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**법제적 흐름인 새로운 녹색혁명**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고,

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위기를 **새로운 경제도약의 기회**로 활용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임.